

지 정 토 론 (1)

- 공인 보도와 인격권에 붙이는 몇 개의 물음 -

권 석 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1. ‘사이버망명’ 논란과 ‘혼외자’ 의혹 사이

대검찰청은 9월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검찰과 포털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같은 달 16일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은 조치였습니다. 뒤이어 카카오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카톡 대화내용을 누군가 들여다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이버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 사용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모바일메신저로 대거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다음카카오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같은 ‘사이버검열’ ‘사이버망명’ 논란은 이번 세미나 주제인 ‘공인 보도와 인격권’과 밀접합니다.

이번 주제는 또한 지난해 불거졌던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의혹과도 닿아 있습니다.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가 그의 공적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의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공인 보도 논의는 사이버망명 논란과 혼외자 의혹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재형 교수의 발제에 몇 가지 물음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2.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김 교수가 제시한 “공인에 대한 보도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제도권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나아가 SNS라는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SNS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인의 인격권도 소비재가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스타는 인격권의 훼손을 감수하는 대가로 권력과 사회적 명예,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 아닐까. 연예인의 경우 과거사를 둘러싼 악평(惡評)도 힘이 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교수의 지적처럼 공인의 내밀영역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인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인의 내밀영역 역시 ‘거실의 영역’ ‘안방의 영역’ ‘화장실의 영역’ 등 구체화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만약 길거리가 아닌 집안에서 같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동영상에 담겼다면 보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은밀한 ‘내밀영역’이라고 해도 공적 활동과 관련 있는 때에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공인의 성관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보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 의혹이나 성 접대 동영상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인 사생활 보도, 어떤 기준이 더 필요한가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보도의 맥락과 상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그 보도가 나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관련 핵심 인물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면 정치적 저의나 배경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생활 보도는 특정인을 공격하고 몰락시키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논문 표절 시비 등은 그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는 자사의 보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 사회도 사생활 보도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공론의 장이 음모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공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앞서 거론한 내용이 언론사에 관한 것이라면 공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도 다뤄져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공인의 자세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만약 공인의 자세가 적절치 않다면 언론 보도 역시 오버슈팅(overshooting)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고소·고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니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대해서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린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소송 원인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나 위협 소송 등 소송 권한의 남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심석태, “한국 언론의 품격”)

이처럼 공인이 소송 등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다소 지나친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할 경우 해당 매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보도를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언론 보도→과잉 대응→과잉 보도→과잉 대응의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만 키워가는 셈입니다. 언론과 공인 양쪽 모두 어떻게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5.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보장할 길은 없나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인격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두 가치의 균형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았다면 형성되지 않았을 명예, 따라서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명예인 ‘허명(虛名)’을 보호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의 잣대를 대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받아쓰기’ 보도, ‘부풀리기’ 보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 공인에 대한 보도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인과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이란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의 ‘갑(甲)질’에 그칠 가능성이 큼니다. 보도가 갖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이 안게 될 피해를 신중하게 비교한 뒤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보도 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종국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정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언론의 책임감입니다.